

第62回 (閉會中)

서울特別市 鍾路區議會 鍾路區 區有財産에 관한 行政事務調査 特別委員會 會議錄 第5號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6年 9月 18日(水) 09時 55分

場 所 小會議室

議事日程

1. 鍾路區 區有財産에 관한 行政事務調査 報告書 採擇의 件

審査된 案件

1. 鍾路區 區有財産에 관한 行政事務調査 報告書 採擇의 件 1 面

(09時 55分 開議)

○委員長 安哲柱 회의진행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기에 제5차 종로구 구유재산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종로구 구유재산 소유 현황과 관리 상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효율적인 재산 운영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96년 8월 13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본 종로구 구유재산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委员 여러분께서 생업을 전폐하시피 조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수고하신 결과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특위 조사 결과 종로구는 '88년 5월 1일 구 자치제 실시로 서울특별시로부터 종로구로 권리승계된 재산 소유권 이전으로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재산의 분류시 구유재산으로 될 재산을 시유재산으로 잘못 분류하여 방치해 왔고 기부채납 재산에 대한 전문 인력 부족으로 종로구로 이관되지 않았거나 이관된 재산도 반환소송이 진행되는 등 종로구 재산 관리의 난맥상이 드러났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사보고서를 참고하시면서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로구 구유재산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1. 조사 목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조사 목적 '88년 5월 1일 구 자치제 실시로 서울특별시로부터 종로구 권리승계된 구 유재산의 소유현황과 관리상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방안을 강구 종로구 자치재정 확충을 높이기 위해서 실시되었습니다. 조사의 범위와 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 조사의 일정, 조사의 목적근거, 조사의 요령, 조사시 관련법규에 대해서는 이미委员 여러분께서 아시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특위의 실적을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간추려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사 본관 건물 1,821평을 서울시 재산에서 종로구 재산으로 1996년 8월 23일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둘째, 1988년 5월 1일 서울특별시로부터 종로구로 권리승계된 구청 강당 건물 현재 소방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 5,712.77㎡를 종로구가 승계 즉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지금까지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누락한 상태였습니다. 셋째, 1993년 2월 26일 신축된 종로보건소를 미준공 상태로 이제까지 방치해오다가 1996년 8월 30일 건물 748평을 종로구로 소유권 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넷째, 각 동청사 중 사직동사무소 외 5개 동 건물 896평을 종로구로 소유권 보전등기를 필했습니다. 다섯째, 복지시설 중 부암동어린이집 외 4개 동 토지 496평

과 인영노인정 외 9개소 건물 659평을 특위기간 중 종로구로 등기 필요했으며, '96년 신규취득 재산 중 명륜청소년회관 토지 97.2평과 부암동 어린이 집 외 3개소 425.9평을 모두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여섯째, 연지어린이공원 조성 후 종로구로 기부채납되어야 할 토지 2,826.28㎡ 공시지가가 ㎡당 108만원 상당입니다. 이 재산이 종로구로 미이관되었는 바 공시지가 기준으로 30억5,200만원에 상당한 재산이 종로구로 아직 미이관된 상태입니다. 일곱째, 현대건설 사옥 증축과 관련 현대건설로부터 기부채납된 원서공원 토지 692평과 건물 706평이 현대측의 반환소송 제기로 소송의 승패에 따라 32억9,200만원 상당의 종로구 재산 손실이 예상되며, 여덟째, 1988년 4월 20일 종로구의 재산분류 잘못으로 대지, 임야, 도로, 하천, 구거 등 서울시 재산으로 되어 있는 1,388필지 평수로 10만5,278평의 재산이 종로구로 환원되어야 할 재산으로 조사되었으며, 종로구 과세기준 평균지가로만 계산해도 3,138억9,800만원 상당의 구유재산을 찾아냈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을 다시 요약해 드리면 1988년 4월 30일 시 구유재산 분류 착오 등 3,138억원과 20m도로와 접한 필지분할로 구유로 환원 대상 재산 101억원, 연지어린이공원, 기부채납 토지 30억원으로 모두 3,269억원 상당의 재산을 찾아냈으며 이는 95년 종로구 예산지출액 810억원을 기준으로 종로구 예산의 4년간의 재원을 확보하는 본 특위활동의 개가를 올렸습니다. 조사보고서를 참고하시면서 혹시 이의사항이 있거나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하는委員 있음)

예. 玄壽漢委員님 말씀하십시오.

○玄壽漢委員 그동안委員長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 10항에 노인정 관리 소홀 항목에 이것이 지번이 없어요. 어느 노인정인지 그것이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安哲柱 이것이 인쇄과정에서 오른쪽에 여백난이 있었는데 앞의 청운노인정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10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구유재산 중에서도 관리상태와 운영상태 조사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운노인정은 이용객이 적다는 이유로 종로구 자치행정발전위원회에서 임대수입을 올리고자 하는 계획으로 1995년 10월 19일 폐쇄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은 행정재산에서 재무과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어서 그동안 재무과에서 관리해오다 어떤 이유인지 1996년 6월 27일자로 다시 노인정으로 환원된 재산이었습니다. 저희 특위 위원께서 직접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본 결과 노인정은 유리창이 깨져 있고 무허가 건물 1동이 있는 등 재산 관리와 운영에 문제점이 지적된 노인정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玄壽漢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安哲柱 또 이 보고서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하는委員 있음)

예. 李炯述委員님 말씀하십시오.

○李炯述委員 거론을 해도 팬찰을지 모르겠는데 5번 가회동 동청사 4필지 대지의 신축된 동청사는 소유주의 토지 사용 절차를 무시한 채 준공된 것이 사실입니까?

○委員長 安哲柱 예.

○李炯述委員 그런데 동청사를 가회동 유지분들이 땅을 기증을 했어요. 옛날에 기증을 했는데 그것이 많은 세월이 흘러갔단 말이에요. 그것을 후손들이 우리 아버지 땅을 기증한 사실이 없다는 이런 얘기를 안하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상태인데 기부채납 절차를 밟아가지고 등기하지 않았다면 그 당시 공무원에게 잘못이 있는 것인데 그 대로 지금까지 오다보니까 후손들도 이리저리 옮겨가고 없어요. 이것이 많은 세월이 흐른 상태가 아닙니까? 재산권의 분쟁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지금 현재 다른 곳도 아니고 노인정 대지로 기증한 것을 후손들이 이것은 내

땅이다라고 나오면 지금 살아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노인들이 직접 받은 사람도 살아 있는데 지금 이것을 거론했을 때 오히려 거론 안한다는 것보다 이해득실면에서 조금 우리 종로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거론을 안하고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委員長 安哲柱 李炯述委員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가회동청사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5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토지사용 승낙절차를 위반했다는 사항에 대한 것은 우선 법적인 사항 부분에서 종로구에서 소방서건물을 신축할 적에 토지사용 승낙절차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종로구에서 소방서 건물을 신축할 때 건축과에서 조건부 허가사항으로 종로구 토지사용주의 허락을 득한 후에 건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종로구에서는 그 사항을 무시해 버렸고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한 저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법적사항도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동사무소 부분에 대한 것도 여기는 분쟁 소지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우선 종로구청, 소방서 문제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를 했던 부분들이고 문제는 여기의 초점은 우리 종로구가 기부채납된 재산을 제대로 관리했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만약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채택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이 계신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보고서에서 빼겠습니다. 어떠십니까?

(「委員長!」 하는委員 있음)

예, 李炯述委員님 말씀하십시오.

○李炯述委員 다시 한 번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가회동 동청사를 신축한 동청사내의 대지가 옛날에 가회동 사는 유지분이 기증을 했어요. 노인정으로 사용하도록 기증을 했는데 많은 세월이 흘러도 후손들이 조상들이 왜 이런 일을 했느냐 하는 가타부타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전혀 후손들이 거론하지 않는 것을 구청으로 하여금 이것을 다시 가만히 있

는 사람을 끌어내서 다시 기부채납을 해라 옛날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을 때 그때 공무원이 기부채납 공부상의 정리를 했어야 되는 것을 그때 하지 않고 많은 세월 흘러 오던 것을 지금 의회에서 구청으로 하여금 이것을 공부정리를 하라고 우리가 결의했을 때 앞으로 수십년이 흘러도 아무 얘기도 하지 않을 사람들을 굶어 부스럼 만들듯이 우리 구 재산에 문제를 야기시키면 지금 현재 많은 노인정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데 왜 굶어 부스럼 만들어 어렵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야기될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委員長!」 하는委員 있음)

○委員長 安哲柱 예, 吳錦南委員님 말씀하십시오.

○吳錦南委員 吳錦南委員입니다. 이 문제를 다룰 적에 가회동 동장님한테 제가 직접 물은 적도 있습니다. 우리 李炯述委員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정하게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특위에서 이것을 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다 넣어놓고 행정부에서 정리하고 안하는 것은 밀어줘야지 여기에서 정리가 안된 상태를 어느 동이라 해서 삭제를 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은 말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특위에서 조사한 것을 그대로 반영하고 행정부에서 하고 안하는 것을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우리는 공정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각 동사무소에 무허가가 조금 있는 것도 여기에 기재가 되거든요. 이것도 공정하게 하는 입장에서 그대로 실어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우리가 한 실적도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것 저런 것 다 빼고 나면 우리가 공정한 입장의 구유재산에 대해서 임한 보람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대로 놔두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委員長 安哲柱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예, 沈載得委員님 말씀하십시오.

○沈載得委員 저도 吳錦南委員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아주 기부채납을 안 받으면 법 절차를 밟아서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언젠가는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安哲柱 혹시 그러면 5번의 가회동청사 신축시 사용주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절차 위반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심사보고 내용 중에도 말씀을 드렸습시다라는 연지어린이공원과 지금 현대건설 사옥 증축과 관련되어 가지고 기부채납 관리가 사실 제대로 안되고 있는 부분중에서 아무리 오래되었다고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재산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이것이 5번항으로 들어갔는데

○李炯述委員 좋습니다.

○委員長 安哲柱 그냥 그대로 두어도 좋겠습니까?

○李炯述委員 예, 좋습니다.

○委員長 安哲柱 그 다음에 아까 玄壽漢委員님께서 말씀하신 10번 사항 중에서 노인정 관리 소홀은 제목을 청운노인정 관리소홀로 이렇게 추가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委員님 심사보고서 내용 중에서 이의가 있으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심사보고서 내용을 종로구 재산특위 활동 심사보고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조사보고서는 委員長이 제63회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 8월 13일부터 한달간 계속되는 특위활동 기간 종로구가 8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저희 위원회

에서 1개월만에 해냈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참으로 고된 여정이었습니다. 그간 우리 특위 위원 여러분의 노고가 20만 종로구민의 복리 증진과 종로 발전에 새로운 계기가 될 것입니다. 20만 구민의 대표기관인 종로구의회와 특위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 제시가 종로구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자부하면서 오늘 제5차 종로구 구유재산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18分 散會)

○出席議員 9人

安哲柱 宣相善 李炳文 吳錦南 沈載得
李炯述 玄壽漢 金以煥 羅在岩

○出席專門委員

尹柱彩